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송명화 의원 외 14명
- 나. 의안번호: 제1954호
- 다. 발의일자: 2020. 10. 16.
- 라. 회부일자: 2020. 10. 26.

2. 제 안 사 유

- 서울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위해 ‘원전하나줄이기’,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등을 추진해 왔으나, 기존 정책만으로는 ‘탄소중립’이라는 과감한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워 시민·전문가와 함께 혁신적인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정책을 담고 있으며, 전 부문에서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발생시킨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생태 조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80% 감축하고 나머지는 숲 조성 등으로 상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공공부문에 집중하지만 민간까지 탈탄소 사회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효성을 갖고 지속가능한 추진이 가능할 것임.

- 이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물, 수송 부문 등의 감축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5개 법률(그린뉴딜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건의함.

3.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이 송 처

- 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나. 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건의안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물, 수송 부문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감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개 법률(그린뉴딜 5법)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공공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서울시는 그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린뉴딜 5법, 총 9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음.

- 그린뉴딜 5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제한 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항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추가하는 것, 둘째,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근거 마련과 온실가스 총량 관리 권한 부여, 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가동률 이행 기준 마련, 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감면 혜택 강화와 건축제한 완화, 부동산거래 시 건축물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와 대상 확대 등을 위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개정, 셋째,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등록 금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넷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강화 및 감독권한 이양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기 확대 설치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이 있음.

<그린뉴딜 관련 주요 법령 개정안>

개정 건의 법률	주요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 내연기관 차량 운행제한 대상 확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건물온실가스총량제 근거마련/시도지사에게 총량 관리 권한 부여 · 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가동률 이행 기준 마련 · ZEB 인증 건축물 취득세 감면 혜택 강화 및 건축제한 완화 · 부동산거래시 건축물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 및 대상 확대 · 기존 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등록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강화 및 감독권한 이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전기차 충전기 확대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본 건의안은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서울시에서 관련 부처에 의견을 개진한 그린뉴딜 5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아울러 소관부서는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